

보 상 협 의 공 고

롯데케미칼(주) 외 5개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 “녹지공원(덕양양지바름 방풍림 공원) 조성사업”(사업인정고시: 여수시고시 제2017-198호(2017.07.27.)) 및 “녹지공원(원학동 방풍림 공원) 조성사업”(사업인정고시: 여수시고시 제2017-196호(2017.07.27.))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.

1. 사업시행자 : 롯데케미칼(주) 외 5개사
2. 사업의 명칭 : 녹지공원(덕양양지바름 방풍림 공원) 조성사업 외 1개 공원
3. 공 고 사 유 : 토지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 불명(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)
4. 공 고 기 간(14일 이상) : 2018년 6월 29일 ~ 2018년 7월 13일
5. 협의기간 및 장소
 - 가. 기간: 2018년 6월 29일 ~ 2018년 7월 13일
 - 나. 장소: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완주사무소(전화 : 063-263-8992~4)
6. 보상시기·방법 및 절차 :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, 보상금은 롯데케미칼(주) 외 5개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후 계좌로 입금함.
7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 - 가. 공공용지취득협의서, 위임장, 등기촉탁승낙서 및 보상금청구서 각 3부.
 - 나. 인감증명서[공공용지협의매도용, 매수자 : 롯데케미칼(주)] 2통.
 - 다.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내역 전부 기재하여 발급) 2통.
 - 라.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.
 - 마.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원 각 1통.
8. 토지 등의 표시 : 붙임내역 참조

2018. 6. 27.

롯데케미칼(주) 대표이사 외 5개사 대표이사의
대리인 한국감정원 